#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47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 박홍배·김정호·이용선

김태선 • 한민수 • 김한규

강훈식 · 서미화 · 박지원

신영대 • 윤준병 • 위성락

복기왕 • 한준호 • 민병덕

문정복 • 이광희 • 황명선

김주영 • 이강일 • 문진석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수소자동차 3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자동차 수요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를 단순 전기·수소자동차 등이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무공해자동 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의3·제76조의 16부터 제76조의28까지 신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삭제 등).

#### 법률 제 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5의3. "무공해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 나. 배터리의 내구성 및 에너지밀도
  - 다. 충전기와의 호환성 등 충전 규격
  - 라. 충전에 걸리는 시간
  -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 무공해자동차

제46조제1항 단서 중 "허용기준"을 "허용기준 또는 제2조제15호의3의기준"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을 "(자동차의 저공해화조 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제3항제3호·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을 "제1항"으로, "저공해자동차등"을 각각 "저공해조치자동차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저공해자동차등"을 각각 "저공해조치자동차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저공해자동차등" 우 각각 "저공해조치자동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10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소연 료공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제5장의3(제76조의16부터 제76조의2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의 운행 • 보급 확대

제76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전환 권고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 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 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있다.

- 제76조의17(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76 조의21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 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 3.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 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 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

관이 정하는 시설

-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 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 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 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 제76조의18(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하거나 융자한 자금의 3배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제76조의17제2항에 따른 성능 평가 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 나 부정하게 성능 평가를 받은 경우
  - 2. 제76조의17제2항에 따라 성능 평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76조의19(보급지원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6조의17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 자(해당 설치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 및 같은 항제4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소가스 생산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해당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기간 또는 연료공급시설 및 수소가스 생산시설의 의무운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 설치자 또는 설치 ·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및 의무운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17제1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6조의20(저공해자동차 인증표지 등) ①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 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 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6조의21(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연간 보급하여야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 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승 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의22(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76조의 2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무 공해자동차 생산·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

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거래에 관한 사항, 저 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제76조의23(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 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 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의24(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 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 임차계획 또는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6조의25(민간부문 무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지원) ①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는 무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무공해자 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국기기관등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무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하고 자 금을 우선 보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6조의26(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6조의17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지역적 배분
- 2.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실적 및 계획
- 3.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 4. 교통량
- 5. 그 밖에 구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6조의27(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및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 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

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 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라 한다)
-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
- 5. 그 밖에 전산망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관
- 제76조의28(충전시설의 정기검사) 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자 동차 충전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점검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1조의2제1호 중 "제58조제12항"을 "제58조제12항 및 제76조의20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8조의2제4항"을 "제76조의21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58조제1항"을 "제58조제1항 및 제76조의16"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8조의5제1항"을 "제76조의24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의2. 제76조의17제2항에 따른 성능 평가를 위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의3. 제76조의21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6. 제76조의24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매·임차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 제76조의2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의2. (생 략)	1. ~ 15의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5의3. "무공해자동차"란 전기</u>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태
	양광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u>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u>
	<u>나. 배터리의 내구성 및 에너</u>
	<u>지밀도</u>
	다. 충전기와의 호환성 등 충
	<u>전 규격</u>
	라. 충전에 걸리는 시간
	<u>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u>
	<u>하는 사항</u>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16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u>가. 무공해자동차</u>
없는 자동차	

나. (생략) 16의2. ~ 23. (생략)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 저 등) ①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 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 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 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 호, 제89조제6호 · 제7호 및 제9 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 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 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 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 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 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 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 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u>허용기</u> 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 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

나. (현행과 같음)
16의2. ~ 23. (현행과 같음)
세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허용기준 또는 제2조제15호
의3의 기준

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 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 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 후 ·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 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 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 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 3. (생략)

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자동차의 저공해화조치
<u></u>
,
<u>&lt;삭 제&gt;</u>
2.•3. (현행과 같음)
2. · 3. (연영과 실금)       ② (현행과 같음)
③

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 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 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 다.

-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 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 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 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 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 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 적으로 할 수 있다.
-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 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 | <삭 제> 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 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 설을 설치하는 자

<u>가.</u>	천입	<u>면가스를</u>	연료	로 사용
ŏ	누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

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삭 제>

<삭 제>

 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 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 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 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 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 3. ~ 6. (생략)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
   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
   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

3. ~ 6.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제3호・</u>
제4호 및 제6호

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 ⑩ (생 략)
- ①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 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국수에게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수있다.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
  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
  동차 및 건설기계가 <u>저공해자</u>
  <u>동차등</u>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⑤ ~ ⑩ (현행과 같음)
① <u>제1항</u>
<u> </u>
<u>저공해조치자동차등</u>
저공해조
지자동차등
①
저공해조
치자동차등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 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u>저공해자동차</u> 등에 붙일 수 있다.

① ~ ① (생 략)

16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 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 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⑪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 │ <삭 제> 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 른 전산망의 설치 · 운영에 필 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⑱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삭 제>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 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저공해조치자동차등---------저공해조치 자동차등-----① ~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삭 제>

<삭 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 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 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 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 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 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 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 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 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 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 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 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 적의 이월·거래 등) ① 자동 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 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 도부터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 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 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거 나 무공해자동차 생산·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 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 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 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 과실적의 이월·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 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 <삭 제>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 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

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 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저공 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 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삭 제>

-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 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 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 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렁으 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

<u><삭 제></u>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야 한다.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 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 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 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삭 제>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 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 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 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 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 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 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 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

<삭 제>

<u><삭 제></u>

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 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 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 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 치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략) <신 설>

<신 설>

<삭 제>

치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 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장의3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 해자동차의 운행 · 보급 확대 제76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전환 권고 등)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

<u><신</u>설>

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의 전환 또는 개조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76조의17(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 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76조의21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 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 등적으로 할 수 있다.

-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 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 3.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 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 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 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 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
    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
    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
    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 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 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 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이라 한다)

-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 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 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 여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

<u><신 설></u>

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

제76조의18(과징금 처분) ① 환경 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하거나 융자한 자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제76조의17제2항에 따른 성 능 평가 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하게 성능 평 가를 받은 경우
- 2. 제76조의17제2항에 따라 성능 평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 반행위의 종류,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 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 다.
-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 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

<신 설>

<u>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u> 용한다.

제76조의19(보급지원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 6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 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소유자"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 자(해당 설치자로부터 소유권 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경비 를 지원받은 수소가스 생산시 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해당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 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 계의 의무운행 기간 또는 연료 공급시설 및 수소가스 생산시

설의 의무운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소유자, 설치자 또 는 설치·운영자가 제1항에 따 른 의무운행 기간 및 의무운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 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17제1항에 따라 지원 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지 등) ① 저공해자동차 인증표 지 등) ① 저공해자동차, 저공 해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 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

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 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 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2 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 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 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6조의21(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

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 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 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 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 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 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 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 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 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 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 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2(저공해자동차 보급실 적의 이월·거래 등) ① 자동 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 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이 제76조의21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 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 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 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거 나 무공해자동차 생산·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 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 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 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 과실적의 이월·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 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23(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 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u>여금 납부의무자는</u>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 전시설의 설치 · 운영 등 저공 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 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

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 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4(공공부문 저공해자동 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 라 한다)은 자동차를 새로 구 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신 설>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 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 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 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 동차 구매·임차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 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의 구매・임차 실적을 회계연 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임차계획 또는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 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 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6조의25(민간부문 무공해자동 차의 구매·임차 지원) ①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자 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 에게 무공해자동차의 구매 또 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기기관등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 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 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무공 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u><신 설></u>

임차하도록 권고하고 자금을 우선 보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6조의26(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저공해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76조의17제1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지
   역적 배분
- 2.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실적 및 계획

- 3.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4. 교통량
- 5. 그 밖에 구축계획 수립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 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27(무공해자동차 등 연 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 축) ①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 동차 및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 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 설>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 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 동차 충전사업자"라 한다)
-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
- 5. 그 밖에 전산망의 설치·운 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정하는 기관

제76조의28(충전시설의 정기검사)

- 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 관리 등의 점검을 위해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u>제58조제12항</u>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 2. <u>제58조의2제4항</u>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3. (생 략)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
    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
    한 자

1의5. ~ 2. (생 략) <신 설>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
는 기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1조의2(벌칙)
1. <u>제58</u> 조제12항 및 제76조의20
<u>제2항</u>
2. <u>제76조의21제4항</u>
제94조(과태료) ①
<u>.</u>
1. ~ 1의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1의5.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76조의17제2항에 따른

- 3.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 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신 설>

성등 평가들 위한 서류들 거
짓으로 제출한 자
2의3. 제76조의21제5항을 위반
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
니한 자
3.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 — . , — , .
4. 제58조제1항 및 제76조의16-
5. 제76조의24제1항
J. <u>4110114118</u>
6. 제76조의24제2항에 따른 저
<u>공해자동차의</u> 구매·임차계
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

- ③ ④ (생 략)
- ⑤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 대료를 부과한다.

⑥ (생략)

- 매·임차실적을 제출하지 아 니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
- ③ ④ (현행과 같음)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 니한 자
- 2. 제76조의2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⑥ (현행과 같음)